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

■ 허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440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3
-----------------	---

I. 개요

1. 허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44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허영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2. 26.

(3) 회 부 일 : 2025. 2.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아동의 장애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더라도 상담이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동법이 통과되면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 및 운영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지만, 고령 출산 증가로 장애 영유아가 빠르게 늘고 있고 이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됨.

영유아 장애의 경우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데, 발견과 치료로 이어지는 연계시스템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특히, 이를 국가가 전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로 지자체의 세밀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함. 하지만 서울과 경기 일부를 제외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은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에 대한 지자체의 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도록 하여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세밀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영유아의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절차, 비용 지원,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그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장애의 조기발견) ① ~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절차, 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 및 제5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장애의 조기발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u>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2. 검토의견

- 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영유아 인구(2,446,568명) 대비 장애영유아 인구(22,046명)의 비율은 0.90%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장애영유아 인구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이후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장애영유아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영유아 인구	장애 영유아 인구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비율
2010	3,702,245	16,162	36	493	1,170	1,880	2,122	2,747	3,517	4,197	0.44
2011	3,686,903	15,020	37	401	1,023	1,569	2,322	2,581	3,205	3,882	0.41
2012	3,701,023	14,521	33	508	1,097	1,473	1,967	2,808	3,064	3,571	0.39
2013	3,713,797	14,623	29	437	1,088	1,549	1,908	2,431	3,651	3,530	0.39
2014	3,705,692	15,206	31	446	1,067	1,583	2,032	2,498	3,361	4,188	0.41
2015	3,656,264	15,619	26	459	1,066	1,566	2,196	2,809	3,579	3,918	0.43
2016	3,601,538	16,912	46	521	1,047	1,583	2,293	3,108	4,210	4,104	0.47
2017	3,518,157	18,455	46	517	1,157	1,640	2,313	3,310	4,637	4,835	0.52
2018	3,381,121	19,389	41	482	1,066	1,804	2,482	3,300	4,865	5,349	0.57
2019	3,216,739	19,909	43	483	1,014	1,721	2,898	3,520	4,658	5,572	0.62
2020	3,003,660	19,670	36	381	915	1,614	2,825	3,957	4,786	5,156	0.65
2021	2,828,629	20,731	28	409	801	1,598	2,734	4,121	5,591	5,449	0.73
2022	2,649,793	21,724	20	352	728	1,320	2,700	4,110	6,056	6,438	0.82
2023	2,446,568	22,046	25	330	728	1,178	2,324	4,226	6,200	7,035	0.90

주1): 인구수는 각 년도 말 기준임.

주2):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근거하여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함.

주3): 비율은 '장애영유아 인구/전체 영유아 인구'를 계산한 수치로, 장애영유아는 등록장애인을 기준으로 함.

자료: 보건복지부

□ 영유아기에 장애 발생을 발견하는 것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으로, 장애의 조기발견, 진단, 그리고 개입 및 치료로 연계되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및 협력 체계 마련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음.¹⁾

-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2조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영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심화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정밀검사 절차, 비용 지원 및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2조(장애의 조기발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및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장애가 의심되어 추적검사나 심화평가가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방송·신문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에서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협력하여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장애의 예방·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절차, 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 및 제5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1) 강은진, & 최윤경. (2023).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을 위한 법과 전달체계의 현황 및 개선 방안. 유아교육연구, 43(4), 253-278.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법」 제14조 제14조(건강검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과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참고자료 1: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개요).

<영유아 국가건강검진 실시 체계>

구분/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 또는 동일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 영유아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2조,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 ²⁾
검진주기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총 8회)			차수별 1회(최대 6회, 영유아검진 3차~8차)
검진수행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 (보건소) * 공단 위탁수행		시·군·구 (보건소)
비용부담	건강보험재정 (본인 부담 없음)	국비 및 지방비 (본인 부담 없음)		국비 및 지방비 (건강보험가입자: 최대 2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주1): 「모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사업은 별도 실시 없음.

자료: 2025 건강검진 사업안내, 재구성

2)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에 대하여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 건강위험평가 및 흡연·음주·운동·영양·비만 등 생활습관개선에 사용되는 의료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개정안은 현행법에 의해 보건복지부령으로만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정밀검사 절차, 비용 지원 및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사무의 운영 자율성을 도모하고,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맞춤형 지원책 등이 제공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특히, 정밀검사 절차와 비용 지원은 국비가 투입되는 공공의료 영역으로서 일정 수준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 통일성 확보가 요구되는 사안이며, 동시에 각 지역 여건에 따른 유연한 운영 또한 필요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는 입법 방식은 국가가 기본적 틀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2025년 6월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등 총 68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특성 및 관련 사업 시행의 근거 마련을 위하여 이미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또는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등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영유아 발달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제정 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67	18	7	2	3	2	2	1	1	10	2	2	7	2	4	2	2	1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2025. 6.), 재구성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2조 ‘장애 조기 발견’의 정밀검사 절차(1항), 비용 지원(4항)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사업 내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중으로,

「건강검진기본법」에서 국가건강검진 실시·지원에 관하여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함.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진단·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자자체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 조례 제정 지자체 수 : 67개 지자체

□ 장애 조기발견·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등(5항)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관련 부령 개정 시 검토하여 시행('25.12월) 예정으로, 부령 개정 시행 전 별도의 법 조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법 구조적 측면에서 개정할 실익 적음.

나. 대한의사협회

-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영유아 장애의 조기 발견 등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동 개정안에서는 ① 영유아 대상 정밀검사 절차, ② 정밀검사 비용 지원, ③ 정밀검사시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 및 그 가족 대상 장애의 예방·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관련 지원체계 등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임.
- 동 개정안의 내용을 통해 소외되는 지역 없이 영유아 장애의 조기 발견부터 치료까지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해당 지원에 있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정밀검사비 지원사업 개요〉

□ 영유아 건강검진 ('08년~)

- (목적)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월령별 발달상황에 맞는 건강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원내용) 6세 미만(생후 14일~71개월) 영유아 대상으로 총 8회* 제공
 - * 4차·5차·6차·7차 영유아 검진 내 구강검진 포함(총 4회)

구 분	대 상 (25년 기준)		시행주체(시행방법)	예산
의료급여수급권자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12,645명	시·군·구 보건소 (위탁수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고
건강보험가입자		1,568,098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수행)	건보재정

○ (비용부담) 본인부담 없음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재정으로 부담 ('25년 재정 추계 : 약 847억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고 및 지방비로 부담 ('25년 5억 1,900만원)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10년~)

- (주요내용)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비급여 포함)으로 차수별 1회(최대 6회, 영유아검진 3차~8차)
 -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실비 정산)
 - **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원(실비 정산)
- (대상아동) 영유아 검진 결과(발달평가)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 * ('25년 예산, 국고) 5억 9,500만원

발달평가(K-DST; 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방법

- ▶ (평가영역) 6개 영역(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영역별 8개문항
- ▶ (대상아동) 3차(생후 9개월~12개월) ~ 8차(생후 66개월~71개월)
- ▶ (검 사 자) 부모작성형

- ▶ (평가방법) 각 문항 합산 영역별 총점 산출, 총점이 월령집단내에서 표준편차 미만일 경우 심화평가 대상

* K-DST는 선별평가이며 부모보고에 의존한 검사로, 발달지연의 확진을 위해 정밀검사 필요

○ (대상기관) ‘의료기관’에 한함 (의사의 진단 및 검사 의뢰서 필요)

<영유아 건강검진 차수별 세부항목>

검진항목		목표질환	1차 검진 (생 후 14~ 35일)	2차 검진 (4~6 개월)	3차 검진 (9~12 개월)	4차 검진 (18~24 개월)	5차 검진 (30~36 개월)	6차 검진 (42~48 개월)	7차 검진 (54~60 개월)	8차 검진 (66~71 개월)
문진 및 진찰	시각 문진	시각이상 (사시)	●	●	●	●	●	●	●	●
	외안부 시진	굴절이상 (약시)	●	●	●	●	●	●	●	●
	시력 검사	굴절이상 (약시)						●	●	●
	청각 문진	청각이상	●	●	●	●	●	●	●	●
	귓속말검사	청각이상					●			
	예방접종확인	예방접종								●
신체 계측	키	성장이상	●	●	●	●	●	●	●	●
	몸무게		●	●	●	●	●	●	●	●
	머리둘레		●	●	●	●	●	●	●	●
	체질량지수	비만					●	●	●	●
발달평가 및 상담* (발달선별평가)		발달이상			●	●	●	●	●	●
건강 교육 및 상담	안전사고예방	안전사고예방	●	●	●	●	●	●	●	●
	영양	영양결핍 (과잉)	●	●	●	●	●	●	●	●
	수면	영아돌연사 증후군	●	●						
	구강문진	치아발육상태			●					
	대소변가리기	대소변가리기				●	●			
	전자미디어 노출	전자미디어 노출		●		●			●	
	정서 및 사회성	사회성 발달			●	●	●	●		
	개인위생	개인위생				●				
구강 검진	취학 전 준비	취학 전 준비					●			●
	진찰 및 상담	치아 우식증				●	●	●	●	
	치아검사									
	기타 검사 및 문진 구강보건교육 (보호자 및 유아)		※ 1차 검진(18~29개월), 2차 검진(30~41개월), 3차 검진(42~53개월), 4차 검진(54~65개월) ※ 기타 검사 및 문진 :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							

※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에게 ‘영유아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